

한국법학의 몰락

송희성

前 수원대법대학장·행정대학원장, 논설위원



나는 1962년에 대학 법학과에 입학하여 법학공부를 시작하였고, 「근막염」이라는 희귀병 수술로 투병 끝에 50여년을 강의와 이런저런 저술로 보내왔고, 지금은 70대 말에 접어들고 있다. 그 동안 내가 존경하던 교수님 중 10여명은 고령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생존해 계시나 80세에서 90세가 되는 고령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이다. 내가 62년 대학공부를 시작한 이래, 80년까지는 사법시험을 5명, 10명, 11명, 16명, 22명, 50명 등 극소수를 선발하였다. 이때에는 이론적 이해, 분석력이 뛰어난 사람보다는 「암기력」이 우수한 사람, 갈 곳이 없어 오래 수험생활을 한 사람 외에 우수한 인재들이 「법학교수」로 진로를 바꾸어 법학계는 자못 풍성하였다. 더욱이 일본인들이 떠나 교수자리가 많이 비어있었고, 유명한 분들은 2~3개 대학의 겸직이 허용되던 풍토라 나도 우수한 교수 밑에서 공부하였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와 사법고시에서 300명 이상을 선발하기 시작하여 1000여명으로까지 증가하자, 우수한 사람의 「교수로 진출」은 매우 드물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람들은 시험을 거쳐 판사·검사, 변호사로 진출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두어 2000여명을 입학시킨 후는 학자로의 진출은 더욱 줄었다. 일부 사법시험합격자들이 「교수」이름을 사용코자 대학으로 홀려들어왔으나, 형편없는 수입 차이와 강의 밀천 부족으로 곧 학교를 떠났다. 이런 현상으로 일부 학교는 대학교수 생활과 변호사 생활을 겸직하는 것을 방치하기에 이르렀고, 그것은 교수직책의 불성실로 이어졌다. 겸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변호사 사무실에 없는 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자 아예 대학을 떠나 변호사 사무실로 가버렸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법 의욕을 가지고 대학으로 갔던 변호사들은 몇 가지 이유로 대부분 대학을 떠났다.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자들은 비법학전공자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단편적·쪼가리 공부 외에 풍부한 책을 보려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 대학의 교수가 저술하였거나, 지정해주는 책을 소화시키는데 힘이 부족하여 타저서를 참고할 엄두를 못 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책을 요약된 골격노트에 가까운 것이고, 저술자도 수준이하(?)의 자들이고 보면 그 책을 읽는 자는 더욱더 수준이하가 되고 말았다. 최근 두 권·세권 등으로 되어있던 특정분야가 「한권의 책」으로 요약 출판되고, 그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법학수준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이런 풍토 하에서 공부한 인물들의 자리를 잡아 행세할 것이므로 장래는 매우 암울하다. 교과서들도 그렇지만 「법률학 사전」하나 변변한 것이 없다. 한국 법학수준의 몰락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 한국 법학발전에 그런대로 이바지 해온 10여명의 노학자들이 세상을 떠나면, 한국의 법학수준은 3등이하로 낮아질 것을 우려하면 지나친 기우일까. 법학이 판사·검사·변호사들의 실무가를 길러내는 실용적 학문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적 이론수준의 발전은 실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다. 무릇 법학은 「정의」와 「실정법적 기술」이 합하여져야 그 생명력을 다하는 것이 된다. 현재의 수박겉핥기식 공부로 변호사가 된 자들이 법조계를 지배하게 내버려두는 것은 법학을 한낱 「뺨장기 기술」로 전락시킬 것을 염려한다. 정의가 가득한 법학지도자로서 「교수」를 길러내는 특수한 국가제도가 절대 필요하다. 내가 「한국법학의 몰락」이라고 까지 표현하면서 현재의 한국법학 상황을 걱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80세가 다 되는 나로서는 오늘날의 법서출판계가 「무슨 색도 기술」, 「앵무새 요약기술」로는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60·70년대에 수준을 밀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할 것도 없이 법은 직접적으로 「물건」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에 법학은 「철학」, 「윤리학」, 「심리학」, 「사회학」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이를 외면한 실무는 「고기잡는 그물」과 같은 것으로 결코 정의(正義)를 실현할 수 없다. 나는 국가가 우수한 자들이 「법률문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모여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내가 본 오늘날 법현상은 나이가 들수록 「법철학」적 가치관은 도외시한 채 법기능은 날로 「기능공적 법기술」로 둔갑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법이 「정치」·「경제」의 하위 그물망에서 벗어나 정치·경제 등을 이끄는 가치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